

교직원 퇴직 및 근속기념품 지급 규정

시행: 2024. 1. 4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(전임교원 및 정규직 직원에 한함)의 퇴직기념품 및 근속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 및 산정기준) ① 퇴직기념품은 재직 교직원 중 정년(명예)퇴직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.

- ② 근속기념품은 재직 교직원 중 근속기간 10년, 20년, 30년 근속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.
- ③ 근속기념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은 매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④ 제3항의 근속기간 산정시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에 근무한 기간은 산입하고, 정직, 휴직, 직위해제,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단,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

제3조(지급기념품) 기념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.

1. 퇴직기념품

- 가. 20년 초과 재직 : 공로패, 순금 5돈, 건강검진권 2매
- 나. 10년 초과 20년 이하 재직 : 공로패, 순금 3돈, 건강검진권 2매
- 다. 10년 이하 재직 : 공로패, 순금 1돈, 건강검진권 2매

2. 근속기념품

- 가. 30년 근속 : 근속패, 순금 5돈
- 나. 20년 근속 : 근속패, 순금 3돈
- 다. 10년 근속 : 근속패, 순금 1돈

제4조(지급시기) ① 퇴직기념품은 해당 교직원의 퇴직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근속기념품은 5월에 지급한다.

제5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의 소관부서장인 교무처장이 인사처장과 협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.04.01.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20.02.29.부 정년(명예)퇴직자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